

대학입학 특별전형(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양현고등학교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추천전형 선정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대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및 적성에 알맞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추천전형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자격) 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와 활동은 학년 초부터 학년 말까지로 한다.

제5조(구성) 본 회의 구성은 교감을 위원장, 진로진학부장을 자문위원, 3학년 부장 및 3학년 학급담임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장추천전형을 대입원서 접수 시작 전까지 전체 학생에게 공고한다.

제7조(접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생 본인이 담임교사에게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할 것을 의뢰하고 담임교사가 필요한 서류(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희망서 및 담임 추천서)를 구비하여 선정위원회에 접수한다.

제8조(선정)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 모두를 추천자로 결정함. 단, 각 대학의 전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후에 지원자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1인 3회까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단,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전형에는 제한횟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함.)

나) 해당 대학교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따른 지원자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성적순으로 선정함. 해당 대학의 점수 산출 기준이 없는 경우 학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전 학기, 전 과목, 단위수를 반영하여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함. 단, 전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협의 후에 지원자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재수생을 포함한 전형에 한해서는 해당 대학별 지원자의 석차 연명부에 졸업생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 때 졸업생의 성적은 3학년 2학기까지의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함.

라) 수시6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의 전형은 제한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나)항의 기준에 따라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추천함.

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1학기에 실시하는 전국연합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중 1회 이상 해당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희망자 중에서 나)항의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함. (단, 해당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희망자가 추천 정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인원은 나)항의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함.)

바) 위의 사항 및 기타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결정함.

3) 서울대학교 정시 지역균형 전형

가)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정한 수능 영역별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단순 수능 성적 점수로 석차 연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다.

나) 동점자의 경우 수능 수학 점수 우수자, 수능 국어 점수 우수자, 탐구영역 수능 점수 우수자, 내신 성적 우수자 순으로 정한다.

제9조(성립) 선정위원회의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상실) 제8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추천 전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제12조(시행) 이 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하며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8년 7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희망서

(재학생) 3학년 반 번 성명 :

(졸업생) 20 년 졸업 성명 :

학생 연락처	학부모 연락처	생년월일

순위	희망대학	모집단위	전형명	인원제한여부	비고
예시	OO대학교	OO과	학교장추천	O/x	교과/종합
1					
2					
3					
4					
5					
6					

※ 각 대학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모집 단위 및 전형명을 정확하게 기재.

상기 본인은

첫째, 본교 학교장추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서약합니다.

둘째, 해당 대학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로 선정 시 전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셋째, 추천 대상자 선정 후 추천 포기를 원할경우 반드시 포기원을 제출할 것이며, 자의적으로 추천을 포기하여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인/서명)	학부모: (인/서명)	추천자(담임): (인/서명)
------------	-------------	-----------------

양현고등학교 학교장추천전형 선정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취급	<p>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대입 수시 학교추천전형 학생 추천 ②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학생 연락처, 학부모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학교추천 전형 학생 추천 기간만 보유, 이용, 보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개인정보는 학교추천 전형 학생 추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	---

○ 졸업생 첨부서류 :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끝.

학교장추천전형 포기원

(재학생) 3학년 반 번 성명 :

(졸업생) 20 년 졸업 성명 :

본인은 아래와 같이 2024학년도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을 포기합니다.

구분	대학	학부	학과
1			
2			
3			

2023. . .

학생 : (인)

보호자 : (인)

담당교사 : (인)

양현고등학교 학교장추천전형 선정위원회 귀중